제 889 호
1982. 2.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 경 수
편 집 : 공 보 관 이 충 우
전화 72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말간실
전화 72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605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3
제 1606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7
제 1607 호 : 서울특별시공인조례의지조례 13
제 1608 호 : 서울특별시립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14

◎ 훈 령
제 563 호 : 서울특별시도지형질변경허가신의회규정 14

◎ 고 시
제 60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5
제 61 호 :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변경허가 15

〈이면계속〉

.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432

제 62 호 : 도시계획사업 (가스공급설비) 시행변경허가 17
제 6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8
제 64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결정및지적승인 19
제 66 호 : 용지로 ! 가구역제 6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19

◎ 공 고

제 59 호 : K·S 표시정지처분공고 20
제 61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 20
제 62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행정처분 21
제 65 호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22
제 66 호 :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22
제 67 호 : K·S 표시정지처분공고 23
제 68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 23
제 6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4
제 72 호 : 공평구역제 3 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변경 을위한공람
공고 26
제 73 호 : 사락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계획공람공고 26

◎ 사 령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2.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구본석 ㊞

◎서울특별시조례제 1605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지방고용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 2조 제3항 제 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 (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조 (임용권자) ①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제 1항의 임용이라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면직, 파면 및 감봉처분을 말한다.

제 3조 (신규임용) ①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별표의 직무구분과 직명에 의하되, 별표에 직명이없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직명을 정하여 신규임용할 수 있다.

②고용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한다. 이경우 검정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타자원, 전화교환원을 제외한 1, 2종 고용직공무원은 13세 이상 45세까지
2. 타자원, 전화교환원인 고용직공무원은 18세이상 40세까지
3. 경노무 고용직공무원은 14세 이상 20세까지

④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조 (전보임용) ①고용직공무원은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경우 전보임용 원칙 및 전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고용직공무원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를 행할수있다

다만, 동일직명에 의하여 계속임용하고자 할때에는 전출·입절차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경우 전출·입절차에 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동일기관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인근기관 임용권자와 상호 협의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교육감 또는 교육구청장은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인정될때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에게 그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제 6 조 (정년) ①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타자원, 전화교환원인 고용직공무원 : 45세
2. 원예수, 제도원, 방호원인 고용직공무원 : 60세
3. 기타직종의 고용직공무원 : 58세

②고용직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제 7 조 (당연퇴직) 고용직공무원이 법제 31 조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 8 조 (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면직시켜야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된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된때

제 9 조 (휴직) 고용직공무원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 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때에는 제외한다.

제 10 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고용직공무원이 제 9 조 제 1 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별도로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사업소 및 산하기관 단위로 하나의 정원관리기관(이하 휴직자 정원관리단위라한다)으로 하여 제 2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별 정원을 감안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구청장이 조정임용할 수 있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후 휴직자정원관리단위기관의 교육직공무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보며, 제 2 항의 임용권자는 기관간의 현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 11 조(징계등) ①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면직시키거나 파면 또는 감봉한다.

1. 직무를 태만이 한때
2. 소행이 불량한때
3.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때
4. 빔려 또는 중대한 과실이있을때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그 보수의 3분의1을 감한다

제 12 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82.2.9)

제 1 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재직하고있는 지방고용원(휴직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이조례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감봉처분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영시행당시 감봉처분중에 있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폐지규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지방고용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별표 • 지방고용직공무원의직무구분과직명표

직무구분 / 종별 및 직명	1 종	2 종	경노무고용직공무원
토목건축	선로공 건축공 목공	토석공 판공 철공 초자공 건축보조공	사환
통신	통신공 전화교환원		
전기	전공		
기계	운전원 석판인쇄공 난방공 기계공 철도공	교내공 인쇄공 정비공 기계보조공	
화공	도공 염사공	연초공 화공보조공	
임업		영림수 원예수	
선박	갑판원 선박원 항내선박원		
보건위생		보건조무수	
간호		간호보조수	
업무보조	제도원 필기원 타자원 전산원 계리원		

직무구분 / 종별 및직명	1 종	2 종	경노무고용직공무원
	사 서 원 편 집 원		
기 타	방 호 원 원 예 원 집 배 원	제 품 수 역 무 수 경 비 수 잡 무 수 사 역 수 등 대 수 소 빙 수 합 무 수 조 발 수 간 수 전 달 수 조 기 수 생산지도수	

1. 비고 : 1) 직무구분은 토목, 건축, 통신등을 말한다.
2) 직명은 선로공, 건축공, 목공, 사환등을 말한다.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 2. 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구본석 ㊞

◎서울특별시조례 제 1606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

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별표1 공직자의 행동을 실천)

제4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소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수위 그 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당직근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겸임근무)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

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illegible]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의 3 (파견근무) ①법 제 3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의 2 (복장)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근 무 시 간

제 9 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근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 10 조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①교육감은 그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각 [illegible] 기관의 장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때에는 제 9 조 및 제 10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이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교육감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휴 가

제 13 조 (휴가의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 14 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1년이상 2년미만	8 일
2년이상 3년미만	11 일
3년이상 4년미만	14 일
4년이상 5년미만	17 일
5년이상	20 일

제 15 조 (근무기간의계산) 제 14 조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 14 조의 연가일수가 7 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 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봉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7 조 (결근일수와 연기) ①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 회는 결근 1 일로 한다.

제18조(병가)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누계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때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해로 말미암아 직무 불능일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말미암아 당해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이 미칠우려가 있을때

②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가)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나 근무, 연습소집 또는 검열 점호가 있을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하려할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때

제20조(특별휴가) ①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 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조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의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때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때
3. 청백봉사상 표창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때

제 21 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교육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 1 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 22 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 24 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82.2.9)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 직 자 외 행 동 율

대 민 관 계	대 외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 남에게 겸손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형제 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처)	1
사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자녀	3
	형제 자매	3
	배숙 부모	3
탈상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형제 자매	1

비고 : 휴가는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조례제 1607 호

서울특별시공인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공인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1.12.31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조례제 1608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보건소 수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별표의 구분 제2호의 금액을 각각 2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심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년 2월10일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훈령제 563 호

서울특별시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심의회규정

서울특별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심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은 도시계획국장, 재무국장, 건설관리국장, 환경녹지국장, 상하수국장이 된다.

제3조 제3항중 "제2부시장"을 "부시장"으로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도시계획1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대통령령 제10627호(1981년11월9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60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 건설부고시제 45 호 (79.4.18) 로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강남교육구청 공고제 93 호 (81.12.17) 로 도시계획사업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27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권한위임 사항의 내부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 .

서 울 특 별 시 장

1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남구서초동 469-1,472-3부럭, 206-1,552-19, 856,596-1,591,595,556,558-2, 501-6,12 (12필지)

2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3 . 사업의 규모 (면적) : 15,382 ㎡ (4,683.8 평).

4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 2 가 2-7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구 본 석

5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시행허가후 30 일이내
준공 — 1983.11.19

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생략)

7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61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지정고시 (지적관계)

1 . 서울특별시고시제 390 호 (80.11.24) 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한 강남구 포이동 70-3 일대 및 염곡동 335 일대 동산마을에 대하여

2 . 건설부고시제 382 호 (80.11.17) 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434 호 (80.12.30) 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동 고시제 4 호(81.1.15)로 변경지적승인되었으며 동고시제 103 호(81.4.6)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변경허가한 사항중 토지조서에 수용재결대상의 토지번은 고시되었으나 모지번에서 분할된 지번이 미고시되어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79.12.10)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변경허가 첨정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새마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2. .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포이동 70-3 일대 및 염곡동 335 일대

나. 사업의 규모(면적) : 59,417 ㎡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동산마을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강남구 포이동 75 번지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장 이 인 구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허가일로부터 10 일이내

2) 준공예정일 : 82.6.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새마을과로 문의바람.

토 지 조 서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포이 동	70-19	전	151 ㎡	쌍문동 538	박 형 관
〃	-37	〃	66 〃	포이동 72	김 숙 자
〃	-87	〃	38 〃	쌍문동 538	박 형 관
〃	-89	〃	7 〃	쌍문동 538	박 형 관
〃	-97	〃	106 〃	쌍문동 538	박 형 관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주 소	성 명
포이동	79-13	전	3 ㎡	남창동 205-49	송 명 의
〃	-23	〃	295 〃	포이동 72	허 정 산
〃	-25	〃	36 〃	〃	허 정 산
〃	-26	〃	85 〃	〃	허 윤 철
염곡동	335-7	〃	327 〃	〃	허 정 산
〃	-13	〃	7 〃	〃	허 정 산
〃	336-22	〃	4 〃	〃	허 윤 철
〃	337-40	답	94 〃	〃	이 창 렬
〃	-41	〃	270 〃	〃	이 창 렬
〃	338-11	〃	6 〃	〃	윤 경 중
〃	341-3	〃	2 〃	〃	이 영 섭
〃	362-17	〃	〃	소유주불명	
〃	363-27	〃	93 〃	〃	
〃	364-8	〃	104 〃	〃	
〃	-14	〃	129 〃	〃	
〃	375-18	대	84 〃	역삼동 213-2	이기동외1인
〃	363-28	답	10 〃	논현동 32-34	김 종 수

◎서울특별시고시제 62 호

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시행변경허가

서울특별시고시제 240 호 (80.6.28) 호로 시행허가한 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을 서울특별시 고시 제 48 (82.2.3) 호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81.12.31) 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 설비) 시행, 변경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82. 2. 11.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시행지	성동구송정동 73 일대	성동구군자동 205 일대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가스공급설비)	좌 동
사업시행 면적및규모	31,640 ㎡ (가스제조시설 : 100천㎥/일)	33,058 ㎡ (가스제조시설 : 100천㎥/일)
시 행 자	극동석유(주) 장 홍 선 서대문구충정로 3 가 368-2	극동도시가스(주) 배 윤 수 서대문구충정로 3 가 368-2
사 업 기 간	착공 : 80.7.1, 준공 : 81.12.31	착공 : 82.3.15, 준공 : 83.3.31
사용(수용) 할토지명세	생 략	생 략
위 치 및 계획평면도	생 략	생 략
공사설계도	생 략	생 략

◎서울특별시고시제 6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시고시제 1 호 (69.1.8) 서울시고시제 445 (81.12.22) 로 지적 고시된 영등포구 시행 대동국교 진입로 정비공사의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시행령제 21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하고 있음.

1982. 2. . .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1. 사업시행의위치 : 영등포구대림1·2동
   시점 : 영등포구대림동 861-15앞
   832-14 1036-1 경유
   종점 : 영등포구대림동 1037-14까지
2. 사업의 종류및 명칭 : 대동국교 진입로 정비공사
3. 사업의 규모 : 폭 20 m 연장 204m
   폭 8 m 연장 376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1982.5.31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성명 : 별첨 토지조서

별첨 : 토지조서 1부

◎서울특별시고시제 64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의 청사)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521호(81.12.31)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2.12

서 울 특 별 시 장

o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공용의청사	은평구불광동 280의 17 일대	20,038 ㎡	

o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66 호

을지로1가구역제6지구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42호(80.2.12)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중인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82.2.12

서 울 특 별 시 장

차. 변경인가내용

구 분	사업시행인가	금회변경	비 고
시행면적	3,913.9 ㎡	3,856.2 ㎡	감 57.7 ㎡
대지면적	3,558.3 〃	3,550 ㎡	감 8.3 〃
건축면적	1,242.56 〃	1,242.56 〃	변경없음
연면적	30,916.36 〃	33,650.12 〃	증 2,733.76 ㎡
건폐율	34.92 %	35 %	증 0.08 %
용적율	642.45 〃	662 〃	증 19.55 %
층수	지상 17, 지하 4	지상 20, 지하 4	증 3층
주용도	사무실	업무 및 판매	지하1층 판매
시행기간	1980.2.12- 1982.6.30	1980.2.12- 1983.6.30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59 호

K·S표시정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한국공업규격) 표시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2.2.6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번호 : 1799
2. 허가일자 : 1979.8.16
3. 제조업체명 : 신진밸브공업(주)
4. 대 표 자 : 박관언
5. 소 재 지 : 구로구가리봉동 444
6. 품 목 : 주강 10K 울렌지형 그로브밸브 화학장치용80A
7. 구격번호 : JSB 2361
8. 처분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9. 처분사유 : K·S기준미달(누설)

◎서울특별시공고제 61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

1.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2.2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지정번호	시공구분	취소사유
신영기계설비(주)	당산1가6	홍성업	영등포 12	1, 2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1항 위반
이화정수설비공사	영등포1가105	이정림	〃 18	1종	〃
대성공사	영등포2가216	공병덕	〃 21	1, 2종	〃
풍남화학설비	영등포4가90-2	이길재	〃 25	〃	〃
유성설비공사	신도림1018-6	양봉식	〃 30	2종	〃
한국가스공업(주)	당산3가257-8	박익서	〃 31	1종	〃
대공엔지니어링	영등포4가153	최수형	〃 37	〃	〃
동국설비(주)	양평4가98-5	이동규	〃 38	1, 2종	〃
성창보일러상사	대림1032-4	백판종	〃 40	2종	〃
경신설비	영등포29-131	김용오	〃 44	2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7조2항 위반
대광설비	대림1082-19	김춘성	〃 46	2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1항 위반
삼성종합냉난방	영등포94-43	오재희	〃 24	1, 2종	〃

◎서울특별시공고제 62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행정처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1항 및 동법 제73조1항 규정에 위반되므로 동법제30조 제1항 4호, 5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지정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2.2.8

서 울 특 별 시 장

가. 행정처분내역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적용법규
43	현명산업	이정일	은평구 응암동 98-50	1981.8월부터 무단폐업, 사공실적미보고	지정취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0조 제1항 4호 5호

◎서울특별시 공고제 65 호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서울특별시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인 다음업체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 처분하였기 공고한다.

1982.2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1. 면허취소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면허대수	주 사 무 소
(주) 대운관광	박 희 국	20대	중구회현2가 18-2

2. 면허취소일자 : 82.2.5

3. 면허취소사유 : 면허조건위반, 사업경영부실 (전차량 이미 경매처분 되었음)

◎서울특별시 공고제 66 호

K·S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공업 표준화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K·S표시 정지처분한바 있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 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준해 이를 공고한다.

1982.2.10

서 울 특 별 시 장

허가번호 : 제2300호
허가일자 : 81.1.29
제조업체명 : 동양강철공업(주)
대 표 자 : 박 종 근
소 재 지 : 서울영등포구양평동1가115
규격번호 : KSG 4204
품 명 : 강제사무용의자
종류 및 등급 : 팔걸이 회전의자
처분일자 : 1981.11.9
해제일자 : 1982.2.8

◎서울특별시공고제 67 호

K·S표시경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KS (한국공업규격) 표시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2. 2. 10

서 울 특 별 시 장

허가번호 : 제 2388 호
허가일자 : 1981. 5. 22
제조업체 : 봉신공업주식회사
대 표 자 : 서정일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0-7

규격번호 : KSC 4202
품 명 : 저압 3 상 유도전동기
종류, 등급 : 저압특수농형 1 종 밀폐형 220/380 V 4 극 E 종 60 Hz 5.5-37 kw
처분기간 :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처분사유 : 주의 경고 처분사항 (품질관리기사 세용물이행) 미시정

◎서울특별시공고제 68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 조 1 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 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다 음

지정번호	업체명	소 재 지	대표자	지정품목	위반내용	적용법규
마/30	한진종합설비	마포서교 377/1	고영환	온수보일러 (30만 미만)	무단폐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22 조 1 항 위반 동법 제 30 조 1 항 4 호 적용

❸서울특별시공고제 6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948호(66.2.17)에 의한 시설결정및 서울시고시 제120호(73.11.16)로 지적고시된 영등포구시행 구로2교-신길광장간 도로정비공사 구간내에 저촉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코저 공고함.
2.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하고 있음.

1982. 2. .
서 울 특 별 시 장

- 공 람 개 요 -

1. 사업장위치 : 영등포구 신길5동, 대림1동
   시점 : 영등포구 신길5동 424 번지앞
   종점 : 영등포구 대림1동 824-56 번지앞
2. 사업의 종류및 명칭 : 구로2교-신길광장간 도로신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폭25미터 연장 700 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5. 착수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1982 6.30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 별첨 토지조서

첨부 : 토지조서및 건물조서 1부.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1	대림동 824-61	대	47㎡	47㎡	도로	정남수	신림동 824-61
2	〃 824-56	〃	142〃	142〃	〃	박상중	대림동 907
3	〃 824-36	잡	50〃	50〃	〃	이영흠	〃 919-27
4	〃 824-38	〃	73〃	73〃	〃	〃	〃 〃
5	〃 762-1	대	12,532〃	661〃	〃	영창산업(주)	〃 762

일련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6	대림동 762-1	대	12,532㎡	21㎡	도로	영창산업(수)	대림동 762
7	〃 762-9	〃	128〃	128〃	〃	〃	〃
8	〃 844-36	〃	625〃	115〃	〃	이 영 중	세종로 1 - 15
9	〃 845-1	〃	5〃	5〃	〃	달 준 방	대림동 845
10	〃 761-3	전	118〃	118〃	〃	영창산업(주)	대림동 762
11	〃 760-19	대	985〃	985〃	〃	〃	〃
12	〃 760-6	〃	132〃	132〃	〃	동보전기(주)	인천시북구일산동 18-2
13	〃 760-5	〃	69〃	69〃	〃	〃	〃
14	〃 760-12	〃	152〃	152〃	〃	〃	〃
15	〃 760-15	도로	20〃	20〃	〃	영창산업(주)	대림동 762
16	〃 754-45	전	7〃	7〃	〃	노 병 헌	서대문구신영동 214-45
17	〃 760-17	〃	33〃	38〃	〃	유 영 산	대림동 730
계	17 필			2,758〃			

물 건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1	대림동 760-2 -4	세멘부럭조 스레트즙	창고	6.38평	6.38평	동보 전기(주)	인천시북구일산 동 18-2
2	〃	세멘부럭조 세멘와즙	사택	11.11〃	11.11〃	〃	〃
3	〃	세멘부럭조 스테트즙	변소	1.0〃	1.0〃	〃	〃
4	〃 824-61	목조세멘와즙	주택	12.4〃	12.40〃	오원봉	대림동 824-6

◎서울특별시공고제 72 호

공평구역제3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고시 제212호(80.6.12)에 의거 시행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공평구역제3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일부 건축계획변경과 사업시행기간 변경요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15조1항및 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한다.

1982. 2. 1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변경내용

구 분	사업시행기간	금 회 변 경	비 고
시행면적	5,382.2 ㎡	변경없음	
대지 〃	4,225 〃	〃	
건축 〃	1,440 〃	〃	
연면적	28,240 〃	〃	
건폐율	35 %	〃	
용적율	475 %	〃	
층수	지상12층, 지하4층	〃	
주용도	업 무	업무 및 판매	지하1층 판매
시행기간	1980.6.12-1982.9.30	1980.6.12-1983.9.30	

나. 공람기간 : 82.2.12～82.3.13

다.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720-462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25번지 대주기업주식회사(725-8885)

◎서울특별시공고제 73 호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97호(80.7.2)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되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동사업시행 명령되었기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및 시행규정을 작성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하여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14일간 공람시킨다.

2.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강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된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2. 2. 12

서 울 특 별 시 장

- 사 업 개 요 -

가. 사 업 명 : 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시 행 지 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락, 문정, 오금, 장지, 방이, 마천, 거여, 둔촌, 성내, 이동 일대

다.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

라. 시 행 면 적 : 7,452,003 ㎡

마. 사업시행기간 : 1982.3 - 1986.3 (인가일로부터 4개년간)

사 령

◎ 1982년 2월 9일자　　령제 40 호

강 남 병 원 지방행정서기보 박 창 엽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에 의거 해임에 처함.

◎ 1982년 2월 10일자　　령제 42 호

시 민 과 지방행정주사보 주 의 범

투자관리담당관 파견근무를 명함. (82.2.10-82.8.9)

교 통 기 획 과 지방행정주사 조 규 원

투자관리담당관 파견근무를 명함. (82.2.10-82.8.9)

비 상 계 획 과 지방행정주사보 유 재 곤

투자관리담당관 파견근무를 명함. (82.2.10-82.8.9)

◎ 1982년 2월 11일자　　령제 43 호

신 규 지 우 창

지방의무기좌에 임함.

10 호봉을 급함.

구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장에 보함

◎ 1982년 2월 10일자　　령제 44 호

강 남 구 지방건축기사보 박 기 현

정부합동민원실 파견 (83.2.20-83.2.19)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지방전기기사보 이 준 규

종합건설본부 파견
(82.2.11-82.8.31)

환경과 지방보건기사 신 동 휘

중랑천환경정화추진본부 준비요원
(82.2.11-83.2.10)

종로구 지방보건기사보 민 천 기

중랑천환경정화추진본부 준비요원
(82.2.11-83.2.10)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지방보건연구사 서 병 배

중랑천환경정화추진본부 준비요원
(82.2.11-83.2.10)

◎ 1982년 2월 12일자 령제 45호

중구환경과 지방보건기사 박 사 윤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13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

령제 46호

신 규 유 종 진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동작구 근무를 명함.

령 제 47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종현	교통종합민원신고센타요원발령을 해제함	중구민방위과	지방행정주사
	세종문화회관 근무를 명함.		
김영귀	〃 〃	〃서구신정2동	〃 서기
백정진	교통종합민원신고센타요원발령을 해제함	서대문구	〃 주사보
	운수2과(교통종합민원신고센타)파견근	주택과	
	무를 명함(82.2.12-82.8.11)		
최성남	〃 〃	성북구종암1동	〃 〃
이종하	〃 〃	성북구지민봉사실	〃 〃
하성수	〃 〃	서대문구남가좌1동	〃 서기
김홍무	운수2과(교통종합민원신고센타)파견근	민방위국민방위과	〃 주사
	무를 명함(82.2.12-82.8.11)		
전하철	〃 〃	동대문구신설동	〃 서기

형제 48 호

부녀복지관 지방행정주사 김 진 택

복지과

도봉구수도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이 성 만

복지과

영등포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 이 공 수

근로자회관

영등포구세무2과 지방행정주사 한 영 수

영등포구 보건소

형제 49 호

신 규 권 용 순

지방별정직 7급상당(도시개발자로원)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시정개발담당관 근무를 명함.

신 규 권 오 련

지방별정직 8급상당(아동복리지도원)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아동상담소 근무를 명함.

신 규 은 경 우

지방별정직 8급상당(아동복리지도원)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아동상담소 근무를 명함.

신 규 문 정 희

지방별정직 8급상당(아동복리지도원)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아동상담소 근무를 명함.

◎ 1982년 2월 11일자　　형제 50 호

건축지도과 지방건축기사 이 현 삼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81.10.13자 파면처분(발령 제406호)을 해임으로 변경함.

◎ 1982년 2월 12일자　　형제 51 호

성북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보 이 옥 순

의약과

마포구보건소
지방간호기원보 송 해 자

외약과

서 울 특 별 시 장